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안내(연장 공고)

2023. 6. 2.

1 서울주거포털 메인화면

■ 서울주거포털 메인화면 신청 절차



2

서울주거포털의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접속 절차]

1.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
=> 2. 청년월세지원 클릭 => 3.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신청자격 확인**과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2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페이지 하단에는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 메뉴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어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권을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신청페이지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3

자가진단

※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자가진단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진단하는 페이지입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결과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대상자격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연령은 2023년 기준 만19세 ~ 39세입니까?

* 선정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예 아니오

2.임대차계약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3.주민등록등본상 거주유형이 1인 가구 맞나요?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함께 있어도 1인 가구로 간주함)

예 아니오

4.무주택자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월세인가요?(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이어야 함)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인 경우 입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예’에 체크하세요

예 아니오

5.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가요?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예 아니오

6.월소득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가요 ? (*23.2월~4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

예 아니오

7.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가요?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포함)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감액되지 않음.

예 아니오

8.주택 소유자에 해당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10.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 비수급자와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수급자 아님 교육 생계 의료 주거급여

11.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나요?

* 민간임대는 가능

예 아니오

12.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또는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나요?

* 사업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사업 참여를 중지 또는 종료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13.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 인가요?

예 아니오

1:1 문의

FAQ

나가기

결과확인

3

자가진단 문항 별 주요사항 안내

1. 주민등록등본 상 1983.1.1. ~ 2004.12.31.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제 거주하는 계약서 상 임차인만이 신청가능. 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함께 있어도 신청은 1명만 가능합니다.
4.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실 확인서가 없을 시 첨부파일 ☞ 참고서식 ☞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시)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 원 * 5.25% / 12 개월) + 월세 62만원 = 79만
천원단위는 절사하며, 월세금액은 관리비 미포함 금액입니다.
- ※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70만원 초과 입력시 신청이 안되고 있으니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월세 70만원으로 입력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7.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8.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9.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0. 대상자 여부는 동 주민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소재지 동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11. SH, LH,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 신청 접수 이전에 서울시, 국토부, 은평형 월세지원금 중 하나의 지원사업이라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13.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약관동의

'약관동의'란은 청년월세지원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로 사업에 대한 '서류심사, 소득 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조사, 지원금 청구 및 지급을 위한 자료 조회와 확인에 필요하며,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관련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은 동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조회할 수 없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대행사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수집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히 읽고,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필수) *

청년월세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 신청과 관련하여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신청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사업과 관련된 사무(신청접수,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등)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인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단, 사업지원 종료 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제공과 참여자는 자신이 의뢰한 개인정보를 소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정보 수신 동의 여부 (선택)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필수) *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했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5

신청인 정보 등록

 신청인 정보

성명	직업군 *	학생
1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확인 ※ 주민번호를 통해 서울거주 여부와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 *	010	비상연락처 *
이메일 *	직접입력	seoulgo.kr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	우편번호 검색	
부동산 소유 여부 *	<input checked="" type="radio"/> 건물 <input type="radio"/> 토지 <input type="radio"/> 건물+토지 <input type="radio"/> 없음	
3 월 소득 *	200 만원 (이백만 원) * 3개월 평균	
생활비 *	월 평균 생활비 30 만원 ※ 식비, 교통비, 문화비, 기타 잡비 등(주거비, 교육비, 취업준비금은 제외)	
4 가족관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없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체크해 주세요 (사망시에도 해당)	
부 성명 *	김길동	부 생년월일 *
		2003-06-05

이전단계 나가기 임시저장 다음단계

- ① 주민번호확인 시에는 블록체인과 연동하여 자격여건을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근접하여 정보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반영이 안 되어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블록체인 연동을 통해, **서울시 거주여부, 1인 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② 휴대전화 정보는 서울시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직접 수정했을 경우에는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 ③ 월 소득(세전금액 3개월 평균), 생활비
☞ **실태조사 통계자료 사용(심사 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④ 가족관계(부, 모 성명 모두 기재)
☞ **말소,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도 부모성명은 확인됩니다. 신청서 상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공고일(23.5.24) 이후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6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 응답소 | 정보공개 | 분야별정보

서울주택포털
로그아웃 | 마이페이지

주거 정책 | 임대/분양 정보 | 자가진단 | 온라인 상담 | 알림소통

자가진단 |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 제출서류 등록 | 성문 참여 | 완료

임대차계약 정보

1

임대인 유형 * 개인 법인

임대인 성명 * 임대인 * 임대인은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

임대인 생년월일 * 1954-04-08

임차주택 소재지 * (04515)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스퀘어 14층 청년주거안심팀

2

계약기간 * 2023-01-01 ~ 2025-04-17 * 재계약 또는 연장시 모두 포함
* 자동연장의 경우 예상시점기재

3

월세금액 * 40 만원(사십만 원) **관리비 *** 월평균 관리비 12 만원(십이만 원)
* 전기요금, 수도료, 청소 등 매월 납부액 포함

임차보증금 * 2000 만원(이천만 원)
*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고시원 또는 무보증 월세 등) 0을 입력하세요.

4

임차면적 * 70 m²
* 신청인이 거주하는 임차공간 계약 면적임

5

주택유형 * 단독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텔(리빙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주거공간 위치 * 지상 지하 반지하 옥탑

주거공간 구조 * 원룸 1.5룸(방1개+거실) 2룸(방2개+거실) 3룸(방3개+거실) 기타

이전단계
나가기
임시저장
다음단계

① 임대인 유형 : 공동임대인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사람"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추가 기능 없음)

② 묵시적 계약 연장일 경우 임대인과 협의한 계약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람에 해당 내용을 신청절차 마지막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등 월 단위 계약은 월세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일 : 6월 2일, 월세납부일 : 4월 25일 → 계약기간 : 4.25 ~ 5.24

③ 월세금액 천원단위는 절사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415,000인 경우 410,000원)

※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70만원 초과 입력시 신청이 안되고 있으니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월세 70만원으로 입력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평수 * 3.3을 하시기 바랍니다(소수점이 표기 되지 않을 경우 근사값 입력)

-다음 페이지 계속-

- 6 -

6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⑤ 주택유형, 주거공간 위치, 주거공간구조

☞ **실태조사 통계자료 사용(심사 시 전혀 영향 미치지 않음)**

※ 참고자료

[주택유형]

- 다중주택 : 5층 이상 "다세대주택", 3층 이하 "단독·다가주주택"선택
- 공동주택 : 5층 이상 "아파트" 선택
- 근린생활시설 : 4층 이하 "다세대주택", 5층 이상 "오피스텔" 선택
-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주거공간 구조]

- 고시원 : "기타" 선택

7

제출서류 등록

서울특별시 2023년 공유기업 단체 (제) 3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식 상담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서울주택포털 주거 정책 임대/보증/공부 시기안내 본인권 상담 알림소통 마이페이지

자가진단 약관동의 신청인 정보 등록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설문 참여 완료

서류 등록

* 모든 파일은 각 7Mb까지 pdf, jpg, jpeg, gif, png, zip 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 모바일은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서류는 PC에서 준비해주세요.
 * 여러장인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주세요.
 * 모든 등록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올려 주십시오.

1.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 가족 관계증명서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첨부는 총 3개까지 가능합니다.(파일당 7MB제한)
 C:\fakepath\Wsh01_060513.zip X
 C:\fakepath\W 설문파일 따오는 화면에서 업로드.JPG X
 C:\fakepath\W 청년임차보증금 (1).pdf X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인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 되는 경우 제출
 * 모든 등록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올려 주십시오.

2. 기타서류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 기타 증명에 필요한 서류

3. 특이사항

※50자~100자이내로 심사에 필요한 의견을 기재해주세요.

* 모든 파일은 각 7Mb 까지 pdf, jpg, jpeg, gif, png, zip 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등록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재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단계 나가기 신청완료

①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JPG, JPEG 등 다른 형식의 파일이 첨부 가능하나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맥북 아카이브 유틸리티를 활용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7

제출서류 등록

[월세 이체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23년 3월 ~ 5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또는 신청접수 종료일 이내로 잔금(보증금)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 23년 4~5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5월 16일 18:00 이전까지 보증금10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 잔금 900만원 이체한 내역을 첨부할 경우 이체확인증으로 인정합니다.

※ 23년 3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5월 이체를 하지 못한 경우 신청절차 마지막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적으신 후 3~5월 이전 최근 납부한 이체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금액을 보내는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부모님이 대신 이체하는 경우 포함),**

이체증에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이나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3가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3.5.24) 이후 발급분(본인 기준 상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서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이사항]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연장인 경우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3~5월 이체증이 없어 이전의 이체증을 첨부하였거나 잔금을 납부한 이체증을 첨부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완료

- ※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 ※ 신청 등록기간 중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등록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파일이 제대로 등록되었고 첨부내용이 열리는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top navigation bar of the Seoul City website with the logo and menu items like '서울특별시', '서울숲 공공미술 프로젝트 개장식', '서울소식', '응답소', '경보공개', and '분야별정보'.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links for '서울주택포털', '주거 정책', '임대/분양 정보', '자가진단', '온라인 상담', '알림소통', and a search icon. The main content area has a dark blue header with the text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and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Below this, a message states: '신청한 상세 내용은 마이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종료 시, 정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At the bottom of the message is a button labeled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 ※ 맥북, 모바일로 접속해서 신청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불안정으로 인해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